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23년 7월 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간 업무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도시과학 정책 연구기관으로 신설되는 통합연구원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통합연구원인 서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2. 주요 내용

- 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으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2조).
- 연구원은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기술개발·연구,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연구,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함(안 제3조).
- 연구원은 서울시의 출연금, 연구원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하고,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 서울시는 출연금 교부, 재산 출연 등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 연구원은 중요사항의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와 감사(2명)을 두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함(안 제5조 및 제6조)
-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받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 시장은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함(안 제10조).
-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고용에 관해 규정함(안 부칙 제3조)
-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 한시적으로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함(안 부칙 제6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기술개발·연구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기술개발·연구
3.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연구

4.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6.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7.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8.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은 시,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 선임일이 빠른 이사가, 선임일이 같은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2. 산업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서 종사했던 사람
 -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⑤ 법 제8조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⑥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6조(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장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각종 조사·기술개발·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기술개발·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제9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과 결산 등의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7조의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임직 이사·감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의 외 직원 포함)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대한 각종 근로조건은 단일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는 직원이 보수 수준

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의 직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본다.

제5조(재산의 승계)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

제6조(통합지원단 설치)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7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를 “서울연구원”으로 한다.